

(우) 04373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40 삼구빌딩 7~8F [http://www.kma.org]/전화(02)6350-6548 / 전송(02)790-8911
보험정책국 국장 김기성(6574) / 보험팀장 손용석(6571) / 팀원 이연주(6548) / email: kma6350@naver.com

문서번호 대의협 제813-12981호

시행일자 2019. 1. 21.

수 신 각시도의사회장, 각전문과목학회장, 대한개원의협의회장, 각과개원의협의회장

참 조

제 목 「임상연구의 영양급여 적용에 관한 기준」 고시 일부개정 안내

1.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12호(2019.1.18.)

3. 위 호 관련, 보건복지부에서 「국민건강보험 영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5조제2항 및 별표 1 제1호 자목에 따른 「임상연구 영양급여 적용에 관한 기준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85호, 2018.4.27.)을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한 바, 이를 전달해드리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 바랍니다.

- 다 음 -

○ 주요 내용 : 임상연구 영양급여 심의기준 구체화, 이의신청 절차 마련 등

○ 시행일 : 발령한 날부터

붙 임 : 보건복지부 검토 결과 1부. 끝.

대한의사협회장

“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”

